

히라리서치(HIRA Research) 운영지침

심사평가연구실 연구기획부

제정 2021.4.30. 지침 제332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히라리서치(HIRA Research) 발간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히라리서치(HIRA Research)(이하“학술지”라 한다)”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공식 학술지를 말한다.
2. “논문”이란 본 학술지에 투고한 원고를 말한다.
3. “논문 심사”란 학술지에 투고된 모든 논문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4. “논문 심사위원(이하“심사위원”라 한다)”이란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는 위원을 말한다.
5. “논문 저자”란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한 저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심사평가원의 학술지 운영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제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학술지의 범위)

본 학술지는 보건의료 정책, 의학, 약학, 간호, 의료 이용 및 의료기술 등의 다양한 연구 분야를 포함한다.

제5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심사평가원이 주관한 학술지 발간에 참여하는 편집위원회, 심사위원, 논문 저자 등에 적용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

제6조(설치)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 심사 및 발간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제7조(구성)

- ①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심사평가연구소장으로 한다.
- ③ 편집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박사학위 소지자
2. 보건의료 및 관련 분야의 연구경력자
3. 논문 및 저술 등 연구업적이 있는 자
- ④ 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지명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이 경우 간사는 학술지 운영에 관한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의 장을 간사로 하며,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임기)

- ① 편집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의 각 호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되는 편집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② 위원장의 임기는 심사평가연구소장 직의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역할)

- ① 편집위원회는 공정한 심사 판정, 학술지 편집과 발간에 관한 제반 업무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1. 심사에 대한 판정
 2. 심사위원 추천
 3. 논문 게재순서의 결정
 4.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5. 그 밖에 학술지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
- ② 위원장은 심사의뢰와 편집위원회 회의(임시회의 포함) 소집 및 주재를

총괄한다.

- ③ 이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0조(편집위원의 해임·해촉)

위원장은 편집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

1. 편집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통보하는 경우
2.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편집위원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편집위원의 제척·회피)

- ① 편집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편집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편집위원이 편집위원회의 심의·의결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그 밖에 편집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편집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편집위원회에 회피 의사를 밝히고 제출하여 스스로 해당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따른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편집위원은 해당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④ 편집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제척·회피로 인하여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게 된 때에 위원장은 편집위원의 보충 임명(부위원장 지명 포함) 또는 위촉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사무국)

편집위원회의 사무국은 학술지 운영에 관한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가 담당한다.

제13조(회의 및 회의록)

- ① 편집위원회 회의는 학술지 매호 발간마다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편집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서면심의서에 의견을 작성하여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문서를 송수신 할 수 있다.
- ③ 편집위원회 회의는 편집위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항의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재적 과반수의 별지 제1호서식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간사는 편집위원회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3장 심사

제14조(심사위원의 구성 및 운영)

- ① 편집위원회는 논문 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로 논문 당 3명의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다만, 논문의 전문 분야에 따라 편집위원이 심사위원을 겸할 수 있다.

1. 대학 또는 전문대학 전임강사 이상의 직위를 가진 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3.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원
 4. 편집위원회에서 전공분야 및 실무 경력을 인정하는 자
- ② 심사위원은 논문의 관련 분야 전문가들 중 편집위원회에서 심의가 발생할 때마다 위촉·선정할 수 있다.
- ③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심사위원의 구성에 관한 제반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5조(심사항목)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심사한다.

1. 논문 주제의 창의성
2. 연구 방법의 적절성
3. 내용 전개의 논리성
4. 논문의 완결성
5. 논문 초록의 적합성
6. 학술적 기여도

제16조(심사 절차 등)

- ①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제14조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② 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

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논문 심사 의견서에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편집위원회 사무국은 심사위원이 심사한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논문 심사 의견서를 책임저자(교신저자)에게 송부한다.
- ④ 책임저자(교신저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논문 심사 의견서 수령 후 14일 이내에 수정사항을 기술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수정사항 답변서와 함께 재투고 하여야 한다.

제17조(심사 판정)

- ① 편집위원회는 별지 제2호 내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사위원의 논문심사 의견서 등을 토대로 별지 제5호서식의 논문 심사 판정기준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도록 심사 판정하여야 한다.
 - 1. 게재 가능: 논문의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게재하여도 되는 경우
 - 2. 수정 후 게재: 논문의 자구 및 내용 수정사항이 경미하여 수정 후 게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수정 후 재심사: 논문의 상당 부분에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여 충분한 수정 후에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게재불가: 논문의 수정 후에도 학술지에 게재가 부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② 심사 판정에서 “수정 후 게재”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 논문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게재불가”로 판정할 수 있다.
- ③ 심사 판정이 “수정 후 재심사”일 경우 수정된 논문을 심사한 동일 심사위원 또는 제3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재심사 후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18조(심사 판정의 통보)

-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에 대해 별지 제6호서식 논문 심사 결과(판정)통보서를 책임저자(교신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심사 최종판정 결과에 대해 별지 제6호서식 논문 심사 결과(판정)통보서를 책임저자(교신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이의신청)

- ① 논문 저자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 및 수정요청 내용, 또는 편집위원회의 심사판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있을 시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인용 시 심사위원을 재구성하여 재심사를 실시하고 최종 결과는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④ 위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이의신청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자는 편집위원회의 이의신청 결정에 대하여 다시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제20조(심사위원의 제척·회피)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에서 제척된다.
 1. 논문을 투고한 위원장 및 편집위원, 심사위원
 2. 그 밖에 해당 논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심사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편집위원회에 회피 의사를 밝히고 스스로 해당 심사에서 회피할 수 있다.
- ③ 편집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제척·회피로 인하여 심사위원을 구성하지 못하게 된 때에 심사위원을 보충 선임하여야 한다.

제4장 연구(출판)윤리 및 저작권

제21조(연구윤리 목적)

학술지 발간과 관련한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에 이를 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2조(논문 저자의 윤리)

- ① 본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거나 투고하는 논문 저자는 이 지침의 연구 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연구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논문 저자의 역할과 책임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책임저자(교신저자)는 공동저자의 기여도를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 ④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명윤리 및 안전 확보가 필요한 논문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생명윤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한다.
- ⑤ 논문과 관련된 잠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논문에 기술하여야 한다.

제23조(연구 부정 행위)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논문 저자는 연구

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

1.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위조 행위
2. 연구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변조 행위
3.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표절 행위
4.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부당한 저자 표시 행위
5. 논문과 관련하여 습득한 중요한 정보나 자료를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6.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이미 출간·발표한 논문을 정당한 승인(허가) 또는 절차 없이 다른 기관 및 학술지 등에 일부 제목, 순서 등을 수정하여 마치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출간·발표하는 행위
8.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제24조(연구 부정행위 처리)

- ① 논문 저자의 연구윤리 위반 사항이 의심될 경우 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연구 부정행위 위반에 대한 사실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회에서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될 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한다.

1. 학술지 게재 목록에서 삭제
2. 차기 학술지에 연구윤리 위반사항 및 조치 결과 공지
3. 해당 논문의 저자는 판정 후 2년간 본 학술지 투고 정지

제25조(편집위원회의 윤리)

- ① 편집위원은 논문의 저자와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며, 논문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편집위원회는 이 지침 및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반하는 심각한 위반 사유가 발생되면 철회를 권유하여야 한다.
- ③ 편집위원회는 공개 전문가 심사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한 심사위원의 신원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26조(심사위원의 윤리)

- ① 심사위원은 논문에 대해 학문적 독립성을 존중하며,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 ② 심사위원은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아니 된다.
- ③ 심사위원은 이해상충의 관계가 있다면 별지 제7호서식의 이해상충서를 작성하여 즉시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심사위원은 논문의 저자와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며, 논문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심사와 관련한 비윤리적 행위의 금지)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은 공정한 심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윤리적 행위를 삼가 하여야 한다.

1. 맡은 심사를 제3자에게 부탁하는 행위
2. 논문을 읽지 않고 심사 또는 평가하는 행위
3. 심사 중인 논문의 내용을 동료와 논의하는 행위
4. 논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명예손상이나 인격적 불이익 등에 해당하는 언어를 쓰는 행위

제28조(저작권 양도)

게재가 결정된 논문의 저작권은 심사평가원으로 양도되며, 심사평가원은 논문에 대해 출판, 배포, 인쇄 등의 저작권을 가진다.

제5장 투고 및 접수

제29조(투고)

- ① 투고 논문은 별표의 HIRA Research 원고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 ② 논문 투고 시 별지 제8호서식의 논문투고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별지 제9호서식의 연구윤리 서약서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제출한다.
- ③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대상 논문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증명서(또는 심의면제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대상 논문의 경우임에도 심의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는 논문 저자에게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접수)

- ①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연중 수시로 접수한다.
- ② 투고된 논문은 별표의 HIRA Research 원고작성 요령 준수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준수하였다고 인정하였을 때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작성 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논문 저자에게 접수 부적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③ 부적합을 통보받은 논문 저자는 원고작성 요령을 준수하여 재투고를 할 수 있다.

제6장 수당

제31조(수당 지급)

- ① 회의에 참석한 편집위원 및 심사를 마친 심사위원에게는 회의비,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책임저자(교신저자) 또는 제1저자에게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 ③ 원고료 지급은 심사평가원 예산집행기준에 따른다.

제7장 발행 및 보관

제32조(발행횟수 및 발행일)

본 학술지는 연 2회 발행하며, 발행일은 5월 31일, 11월 30일로 한다.

제33조(논문의 반납 및 보관)

접수된 모든 논문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사무국에서 5년 간 보관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1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HIRA Research 원고작성 요령

1. 원고의 종류

원고의 종류는 원저(original article), 종설(review article), 서신(letter), 단신(brief communication), 기타 등으로 한다.

- 1) 원저란 특정 주제의 관찰 등을 통해 결과를 보고하고 의의를 논한 원고를 말하며, 저자의 독창적인 이론이나 연구 방법, 현상의 발견, 해석, 고찰 등을 제시한다.
- 2) 종설이란 특정 주제에 대한 현황을 검토하거나 기존의 연구를 조사·정리한 원고를 말하며, 보건의료분야의 제도 또는 정책, 외국의 최근 동향 등 특정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 제기, 사례 분석, 향후 대안 및 방향 등을 제시한다.
- 3) 서신이란 학술 분야와 관련한 개인적 의견이나 학회지에 출판된 특정 연구에 대한 의견 및 비평을 제시한 원고를 말한다.
- 4) 단신이란 연구의 진행정도나 결과가 원저의 수준에는 못 미치나 정보의 제공 또는 추가 연구를 위한 의견 또는 비평을 제시한 원고를 말한다.
- 5) 기타 원고란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지정하여 의뢰하는 원고를 말한다.

2. 원고 작성의 일반적 사항

- 1) 원고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투고할 수 있다.
- 2) 원고 작성 프로그램은 아래아한글(.hwp)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doc)를 사용한다.
- 3) 규격은 A4(210x297mm)를 사용하고, 여백은 상하좌우 25mm, 머리말·꼬리말 15mm로 맞춘다.
- 4) 글자 크기는 10pt, 줄 간격은 200%, 장평은 95로 한다.
- 5) 모든 단위는 국제단위표기법(SI units)을 사용한다.
- 6) 통계에서 유의수준(p 값)은 0.01이 넘는 경우 소수점 두 자리까지 표기하며, 0.01과 0.001 사이의 값은 소수점 세 자리까지, 0.001 미만인 값은 $p < 0.001$ 로 표기한다.
- 7) 의학용어는 대한의사협회가 출판한 '의학용어집' 최신판에 수록된 것을 준용한다.
- 8) 기존 출판된 측정도구를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작권 소유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본문에 인용표기를 해야 한다.

3. 원저

원저(original article)는 아래의 작성 순서에 맞춰 작성한다. 단, 논지의 전개상 불가피한 경

우에 한하여 본문의 배치를 다른 적절한 구분으로 바꿀 수 있다.

- 작성 순서는 ①표지, ②제목만 있는 표지, ③영문초록과 중심단어(Keywords), ④본문(서론, 연구 방법, 연구 결과, 고찰 순으로), ⑤참고문헌, ⑥부록(필요시), ⑦이해관계(필요시), ⑧감사의 글(필요시) 순이다.
- 투고 시 원고는 세 개의 파일로 분리하여 제출한다. 즉, ①표지만 있는 파일과 ②~⑥의 내용을 묶은 파일, ⑦~⑧의 내용을 묶은 파일로 각각 저장하여 제출한다.

원고 구성별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투고 시 제출 자료 등의 사항은 HIRA Research 홈페이지(<https://www.hira-research.or.kr>)를 참고한다.

1) 표지

표지는 원고가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파일로 분리한다. 논문 제목을 국문과 영문으로 각각 작성하고 필요시 소제목(running title)을 40글자 이내로 작성한다. 저자 이름과 소속기관 명칭(국가명 포함)은 국문과 영문으로 각각 작성하고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구 기여도 순으로 나열한다. 책임저자(교신저자) 항목에는 책임저자의 연락처 정보(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작성한다.

밝혀야 할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공시사항에 그 내용을 모두 기술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된 경우 그 원천과 연구비 관리기호 혹은 번호를 기술한다.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없음' 등으로 기술한다. 제1저자와 다른 소속을 가진 저자는 '1,' '2,' '3' 등 아라비아 숫자의 위 첨자로 저자 이름의 뒤, 소속기관 명칭의 앞에 동일하게 사용하여 표시한다.

2) 제목만 있는 표지

제목만 있는 표지에는 논문의 제목만을 작성하며, 저자 이름과 소속기관 등 다른 세부사항은 작성하지 않는다. 논문의 제목은 가급적 간략하게 작성하고 중심단어(Keywords)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목에는 두문자어(acronyms)와 약어(abbreviations)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영문초록(Abstract)과 중심단어(Keywords)

초록은 300단어 이내의 영문으로 작성한다. 내용은 연구 배경(Background), 연구 방법(Methods), 연구 결과(Results), 결론(Conclusion)의 순서로 논문의 요점을 기술한다.

중심단어(Keywords)는 영단어로 3~5개를 선정하여 초록 하단에 기술한다. 중심단어는 미국국립 의학도서관 MeSH (Medical Subject Heading)¹⁾를 참고하여 작성하기를 권장한다.

1) <http://www.nlm.nih.gov/mesh/MBrowser.html>

4) 본문

본문은 간결하게 표현해야 하며 서론, 연구 방법, 연구 결과, 고찰(Discussion)의 순서로 구성한다. 본문의 항목구분은 1, 1), (1) 등의 순서로 한다. 약어는 가급적 최소한으로 사용한다. 필요시에는 처음 사용되는 때에 원어를 풀어서 표기한 다음 괄호에 약어를 쓰고 이후부터는 약어를 사용한다.

서론에는 연구 배경 및 목적을 간단히 기술한다.

연구 방법에는 연구 대상 선정방법, 연구 방법, 연구 자료, 통계 분석 방법 등을 기술한다.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IRB 승인(IRB 승인번호) 및 피험자 사전 동의에 대한 정보를 명시한다.

연구 결과는 논리적으로 기술하고 표와 그림은 본문과 맞추어 사용한다.

고찰에는 연구 결과에 따른 소견, 정책적 제한점 및 연구의 한계점, 관련된 기존 선행 연구와의 비교,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 등에 대해 작성하고 이에 따른 결론을 기술한다.

5) 이해관계

저자는 논문과 관련된 이해관계를 모두 밝혀야 한다. 이해관계란 저자, 저자의 소속기관, 심사자, 편집인이 재정적 또는 개인적 관계가 있어 원고 작성, 심사, 출판 과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은 물론 논문 진실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경우를 뜻한다. 잠재적 이해관계가 원고 준비 과정에서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모든 저자가 확신하는 경우에도 논문과 관련된 잠재적 이해관계가 있다면 원고에 기술해야 한다.

6) 감사의 글

감사의 글은 연구에 기여를 하였으나 저자에는 포함되지 않은 사람에게 쓸 수 있다. 단, 감사의 글에는 해당자의 어느 역할에 대해 감사하는지 명백히 표기하여야 한다. 또한 저자는 해당자에게 감사의 글에 이름이 기술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통보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7) 참고문헌

(1) 본문 내 문헌의 인용

본문 내 인용 문헌에 대해 이름으로 작성한다(예: 홍길동, 2020). 2개의 문헌을 함께 인용한 경우 문헌 사이에 쌍반점(:)을 써서 구분한다(예: 홍길동, 2020; 김철수, 2021).

저자가 2인 이상의 경우에는 제1저자의 성 뒤에 등을 표기한다(예: 김철수 등, 2021).

(2) 참고문헌 목록

참고문헌 목록은 NLM의 Vancouver style(밴쿠버 스타일)에 따라 국문(가나다 순) 또는 영문(알파벳 순)으로 작성한다. 국문과 영문이 섞여 있을 경우 국문, 영문 순으로 작성한다.

국문 학술지명의 표기는 의학학술지 편집인협의회 Korean Medical Journal Information (<http://journals.koreamed.org/>)에서 사용하는 약어를 참고하고, 영문 학술지명의 표기는 미국국립의학도서관의 NCBI Databases(<http://www.ncbi.nlm.nih.gov/nlmcatalog/journals>)에서 사용하는 약어를 참고한다. 참고문헌의 저자가 6인 이하인 경우에는 모두 쓰고, 6인 이상일 때는 6인까지만 작성하고, 그 뒤에 국문의 경우 '등'을, 영문의 경우 'et al.'을 표기한다. 참고문헌에 식별정보(DOI: Digital Object Identifier)가 있는 경우 DOI를 함께 기술한다.

[참고문헌 예시]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하고, 아래에 서술되지 않은 참고문헌 형식은 미국국립의학도서관 홈페이지(<https://www.nlm.nih.gov/>)를 참고한다.

- **학술지** (저자명. 논문명. 학술지명. 연도:권(호):페이지 pp.)
Lee H, Lee JR, Jung H, Lee JY. Power of universal health coverage in the era of COVID-19 A nationwide observational study. Lancet Reg Health West Pac. 2021 Feb;7100088. DOI: 10.1016/j.lanwpc.2020.100088
- **연구보고서** (저자명. 보고서명. 출판지역: 수행기관: 출판연월. 페이지수. 발간등록번호)
Page E, Harney JM. Health hazard evaluation report. Cincinnati(OH):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US);2001 Feb. Report No.:HETA2000-0139-2824
- **단행본** (저자명. 도서명. 출판지역: 출판사: 연도.)
Hofmeyr GJ, Neilson JP, Alfirevic Z, Crowther CA, Gulmezoglu AM, Hodnett ED et al. ACoc hrane pocketbook: Pregnancy and childbirth. Chichester, West Sussex, England: John Wiley & Sons Ltd; 2008.
- **전자책** (저자명. 웹페이지명 [Internet]. 출판지역: 출판사: 연도 [cited 인용날짜]. Available from: U RL)
OpenStax College. Anatomy & physiology [Internet]. Version 7.28. Houston: The College; 20 13 Apr 25 [cited 2015 May 28]. Available from: <http://cnx.org/content/col11496/latest/>
- **전자저널** (저자명. 논문명. 학술지명 [Internet]. 연도 월 [cited 인용날짜];권(호):페이지 pp. Availabl e from: DOI 또는 URL)
Aho M, Irshad B, Ackerman SJ, Lewis M, Leddy R, Pope T, et al. Correlation of sonograph ic features of invasive ductal mammary carcinoma with age, tumor grade, and hormone-r eceptor status. J Clin Ultrasound [Internet]. 2013 Jan [cited 2015 Apr 27];41(1):10-7. Availab le from: <http://onlinelibrary.wiley.com/doi/10.1002/jcu.21990/full> DOI: 10.1002/jcu.21990
- **웹페이지** (홈페이지명 [Internet]. 웹페이지 생성연도. 웹 페이지명: 웹 페이지 생성일 [cited 인용날 짜]. Available from: URL)
Alzheimer Society of Canada [Internet]. c2015. Benefits of staying active: 2013 Jan 28 [cited

2015 May 29]. Available from: <http://www.alzheimer.ca/en/kfla/Living-with-dementia/Day-to-day-living/Staying-active/Benefits-of-staying-active>

- **학위논문** (저자명. 논문명 [학위유형]. 출판지역: 학위수여 학교명; 연도. 페이지.)
Zhao C. Development of nanoelectrospray and application to protein research and drug discovery [dissertation]. Buffalo (NY):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2005. 1-276.
- **세미나 또는 학술대회 발표논문** (발표자명. 제목. 학술대회명. 학술대회 날짜; 학술대회 지역.)
Chasman J, Kaplan RF. The effects of occupation on preserved cognitive functioning in dementia. Poster session presented at: Excellence in clinical practice. 4th Annual Conference of the American Academy of Clinical Neuropsychology; 2006 Jun 15-17; Philadelphia, PA.
- **신문기사** (기자명. 기사제목. 신문명. 날짜. 칼럼 번호)
Tynan T. Medical improvements lower homicide rate: study sees drop in assault rate. The Washington Post. 2002 Aug 12:Sect. A:2 (col. 4)

8) 표 또는 그림

- (1) 표/그림은 본문에 포함된 내용과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표/그림은 본문에서 인용되는 순서에 따라 아라비아 숫자로 번호를 붙인다.
- (2) 표 제목은 표 상단에 왼쪽 정렬하고, 그림 제목은 그림 하단에 가운데 정렬하여 작성한다.
- (3) 동일 번호에서 2개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아라비아 숫자 다음에 알파벳을 붙인다(예: 그림 1A, 그림 1B). 본문에서는 그림 1A, 그림 1B와 같이 표기한다. 이는 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4) 표의 내용은 간략하게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한다. 표에 사용된 단위는 가능한 표의 내부에 표시한다. 표 속에 약자를 사용한 경우나 부연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하단에 주석으로 기술한다.
- (5) 표 각주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의 우측에 기호(*, †, ‡, §, ||, ¶, **)의 순서로 함)를 위 첨자로 사용하고, 해당 기호의 내용을 표 하단에 주석으로 기록한다.
- (6) 소수점을 사용하는 경우, 유의수준*은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평균, 표준편차는 소수점 2자리까지, 백분율과 평균 연령은 소수점 1자리까지 사용한다.
* 유의수준: 0.01이 넘는 경우 소수점 2자리까지 표기하며, 0.01과 0.001 사이의 값은 소수점 3자리까지, 0.001 미만인 값은 $p < 0.001$ 로 표기한다.
- (7) 다른 참고문헌의 표나 그림을 인용하는 경우 표(또는 그림) 하단(왼쪽 정렬)에 출처를 반드시 표시한다. 이때 일본의 표 또는 그림과 달리 재구성한 경우에는 재구성했음을 명시한다(예: 표 또는 그림 출처(재구성)).
- (8) 그림은 각각의 이미지 파일이어야 하며, 그림이나 사진은 인쇄과정에서 축소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크고 명료한 파일로 제출한다.

9) 부록

부록은 해당 연구에 한하여 작성한다. 예를 들어,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연구의 경우에 검토한 논문 목록을 부록으로 제시한다.

4. 종설, 단신, 서신

종설(review article) 원고는 ①표지, ②제목만 있는 표지, ③영문초록과 중심단어(Keywords), ④본문(서론, 본론, 결론), ⑤참고문헌, ⑥부록(필요시), ⑦이해관계(필요시), ⑧감사의 글(필요시) 순으로 작성한다. 단, 논지의 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본문을 다른 적절한 구분으로 배치할 수 있다. 이외의 사항은 원저의 작성 방식을 준용한다.

단신(brief communication) 원고는 2,000단어 내외로 작성하며 표나 그림은 모두 포함하여 3개를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외의 사항은 원저의 작성 방식을 준용한다.

서신(letter) 원고는 1,000단어 이내로 작성하며 표나 그림은 모두 포함하여 2개를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외의 사항은 원저의 작성 방식을 준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서면심의서

「HIRA Research 운영지침」 제14조에 따라 아래 사항을 서면으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1. 회의명: 제 차 편집위원회
2. 회의일시:
3. 심의안건:
4. 안전별 심의의견

연번	안 건 명	심 의 의 견
1		
2		
3		
4		
5		

상정안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심의합니다.

년 월 일

편집위원회 위원:

(서명)

HIRA Research 편집위원회 귀하

논문 심사 의견서 I

논문제목	
심사일자	20

세부평가					
심사항목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 논문 주제의 창의성					
2. 연구 방법의 적절성					
3. 내용 전개 of 논리성					
4. 논문의 완결성					
5. 논문 초록의 적합성					
6. 학술적 기여도					

평가결과			
게재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1. 게재 가능: 논문의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게재하여도 되는 경우
2. 수정 후 게재: 논문의 자구 및 내용 수정사항이 경미하여 수정 후 게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정 후 재심사: 논문의 상당 부분에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여 충분한 수정 후에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게재불가: 논문의 수정 후에도 학술지에 게재가 부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심사위원 정보			
성명	(서)	전문분야	
소속		직위	

HIRA Research 편집위원회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논문 심사 의견서 II

논문제목	
심사일자	20

심사의견 및 수정 요구사항

* 구체적으로 평가해 주시고, 수정 요구사항에 대해 상세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HIRA Research 편집위원회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수정사항 답변서

구분	심사의견 및 수정 요구사항	수정 보완 내용 및 답변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심사위원 3		

년 월 일

성명:

(서명)

HIRA Research 편집위원회 귀하

논문 심사 판정기준표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심사결과 판정기준
게재가능	게재가능	게재가능	게재가능
게재가능	게재가능	수정 후 게재	
게재가능	게재가능	수정 후 재심	
게재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가능	게재가능	게재불가	
게재가능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게재가능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가능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가능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별지 제6호서식]

논문 심사(판정) 결과 통보서

수신: _____ 귀하

「HIRA Research」에 귀하의 연구논문을 투고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투고된 논문은 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IRA Research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한 심사위원들이 객관적 심사기준에 의해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귀하께서 투고하신 논문의 심사(판정)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1. 심사(판정)결과:

2. 붙임: 심사의견서 1부.

HIRA Research 편집위원회

이해상충서(conflict of interest)

I. 저자정보

1. 이름:

2. 날짜(유효일):

3. 교신저자 여부: 예 아니오

4. 논문 제목:

5. 논문의 고유번호
(ORCID):

II. 출판 고려중인 연구

저자 또는 저자의 기관이 제3자(정부, 기업, 민간, 재단 등)로부터 투고한 연구와 관련한 대가나 서비스(보조금뿐 아니라 데이터 검토위원회, 연구 설계, 원고 준비, 통계 분석 등)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습니까? 예 아니오

III. 투고한 연구 이외의 관련 재정 활동

단체와의 재무 관계(보상 금액과 관계없이) 유무를 표의 해당 상자에 표시하십시오.

여러 단체인 경우 단체별로 한 줄씩 기재 하십시오.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습니까? 예(단체명:) 아니오

IV. 지적재산권 특허 및 저작권

계획 중, 출원 중, 이미 등록 등 단계와 상관없이 광범위한 의미에서 저작물과 관련이 있는 특허가 있습니까? 예 아니오

V. 위에서 다루지 않은 관계

투고한 연구의 내용에 영향을 주었다고 독자들이 인식하거나 잠재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일 수 있는 기타 관계 또는 활동이 있습니까?

예. 다음의 관계/조건/상황이 있습니다(아래 VI. 기타 이해관계 기술에 설명하십시오).

아니오

VI. 기타 이해관계 기술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HIRA Research 편집위원회 귀하

[별지 제8호서식]

논문투고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접수번호	(사무국 기재)		접수일		
논문제목	(한글)				
	(영문)				
※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라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논문을 집필한 모든 저자에 대한 정보를 기여도순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저자	성명	(서명)	영문		
	소속		직위		
	연락처		e-mail		
교신저자	성명	(서명)	영문		
	소속		직위		
	연락처		e-mail		
공동저자	1	성명	(서명)	영문	
		소속		e-mail	
	2	성명	(서명)	영문	
		소속		e-mail	
	3	성명	(서명)	영문	
		소속		e-mail	
	4	성명	(서명)	영문	
		소속		e-mail	
	5	성명	(서명)	영문	
		소속		e-mail	
	6	성명	(서명)	영문	
		소속		e-mail	
논문분야	보건()·의학()·간호()·약학()·기타()				

본인은 HIRA Research에 위 논문을 투고하며, 개인정보제공에 대해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책임저자(교신저자): (서명)

HIRA Research 편집위원회 귀하

연구윤리 서약서

1. 본인은 HIRA Research 연구윤리지침을 숙지하였으며, 본인이 투고한 논문은 HIRA Research 연구윤리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본인은 HIRA Research 연구윤리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이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됨을 인지하고 있으며, 윤리 지침을 준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아래 사항에 대해 점검하였음을 확인합니다(표시).
 - 논문에 참여한 공동저자의 기여도를 공정하게 배분하였습니다.
 - 중복투고 논문이 아니며 「히라리서치(HIRA Research) 운영지침」에 명시된 연구윤리를 준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책임저자(교신저자):

(서명)

HIRA Research 편집위원회 귀하

저작권 이양 동의서

<논문제목>

국문:

영문:

저자(들)는 HIRA Research 논문으로 게재가 결정될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동의합니다.

1. 본 논문이 HIRA Research에 출간될 경우 논문의 저작권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양합니다.
2. 저자(들)는 본 논문에 실제적이고 지적인 공헌을 했으며, 본 논문의 내용에 모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3. 본 논문은 과거에 출판된 적이 없으며, 현재 다른 학술지에 제출되었거나 제출할 계획이 없습니다.
4. 저자(들)는 본 논문이 HIRA Research에 게재될 경우, 본 논문에 따른 권리, 이익,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양도합니다.

저자	성명	소속 및 직위	e-mail	연락처	서명
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1					
공동저자2					
공동저자3					
공동저자4					
공동저자5					
공동저자6					

* 본 동의서에는 논문에 기술된 순서대로 모든 저자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년 월 일

책임저자(교신저자):

(서명)

HIRA Research 편집위원회 귀하